

# 대한한의사협회

##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우)157-80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전화)02-2657-5056/(전송)02-2657-5005

법·의무국 국장:김혁호 의무팀 팀장:이상용 담당:배성환 E-mail:hanmed203@chol.com

문서번호 대한의 제1475호  
시행일자 2014. 8. 4. (년)  
경 유  
수 신 경기도지사  
참 조 교육정책과

선 결			지 시	
접	일자 시간	.	결 재	
수	번호	:	·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 제 목 의료분야 관련 평생교육과정 개설 제한 요청

- 도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힘쓰시는 귀 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국가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에 대해 일반인의 침구시술은 불법의료행위이며, 동 강좌를 개설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사의료인 양성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2008년)” 및 “업무지침”, “질의회신 공문”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등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대해 엄격히 제한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선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명확히 하달되지 않아 의료 행위인 수지침 등에 대한 평생교육 과목개설 및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수지침 등의 침구시술 평생교육강좌개설 등에 관한 지침 및 유권해석 등을 첨부로 안내해 드리니,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 관련기관에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첨 부

-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285, 2004.03.30.)
  - 민원회신(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한방65310-314, 2003.8.4.)
  -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발췌(교육과학기술부, 2008)
  -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관련 질의 회신(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2270, 2011.5.13.). 끝.

대한한의사협회장



## 첨 부

###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285, 2004.03.30.)

###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

(평생학습정책과-285, '04.03.30)

#### 1. 목적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교육행정의 신뢰확보와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함

#### 2. 관련 사항

-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가능 여부

-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 개설 불허

- 이유

가. 평생교육법 제5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의(精緻)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임.

※ 특히 보건복지부(한방65310-160, 침구시술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 회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 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 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 교육을 받은 자가 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음.

## 민원회신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한방65310-314, 2003.8.4.)

민원서류
기한: 20
정보통신망

## 보건복지부

자체심사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503-7535	전송 503-7584
한방의료담당관실	과장 : 김유경	사무관 : 박경근 담당 : 윤재규 yoonjk@mohw.go.kr

문서번호 한방65310-314

시행일자 2003. 08. 04 (1년)

(경유)

받음

참조

### 제 목 민원 회신

- 귀하가 우리부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침구시술(수지침 포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서, 현재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한바, 일반인의 수지침 행위는 불법의료행위(의료법 제25조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98도2389)에서의 상고기각 내용은 그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관한 결정으로서 수지침 행위를 정당화 한 것은 아님으로 일반인의 수지침 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수지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민원하신 2004.10.11)

민원내용 :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원(특히 백화점)같은데서 수강료를 받으며 수지침 강좌를 개설하여 공공연하게 수지침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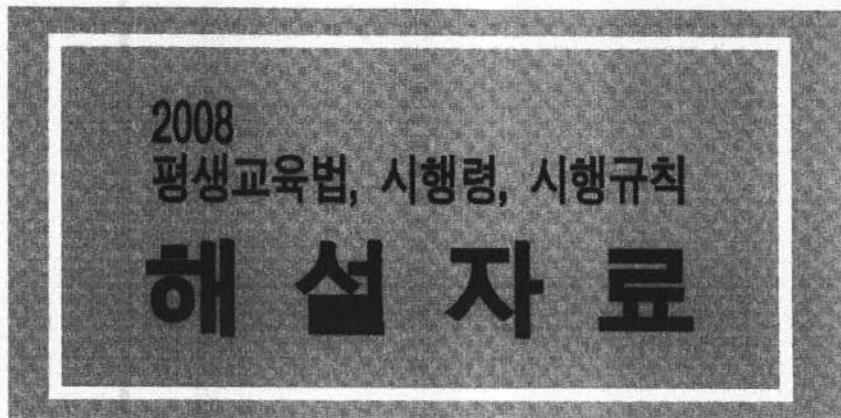
처리결과 : 침구시술(수지침 포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서, 현재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

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한바, 일반인의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의료법」 제25조 위반)임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원 같은 곳에서 수지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사의료인 양성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목	수지침 봉사활동~~~		
성명	김경미	등록일	2004.04.22 17:17:56
처리상태	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수지침 무료 봉사활동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고려수지침학회 회원 중심으로 무료봉사활동으로 수지침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시술하는것은 불법이며 중국에서 한의학을 전공한자가 시술하여도 불법이고... 침술학회에서 받은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시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되어있던데요~~		
	제가 판례를 찾아봤는데...		
민원내용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보건법최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의료법위반)】 【공2003.2.15.(172),555】에서 보너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참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판례에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무료봉사행위이며 수지침진료가 위험성의 정도가 약하고... 자격을 갖춘자가 시술하는 것으로 무료봉사활동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침구시술(수지침 포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 등에 중대한 염 trọng한 미치는 의료행위로서,		
처리결과	- 현재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등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한바, 일반인의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의료법 제25조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98도2389)에서의 상고기각 내용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위배·여부에 관한 결정으로서 수지침행위를 정당화 한것은 아님으로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평생교육법 해설자료(발췌)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평생교육의 실시 형식·방법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에 기초를 두도록 명시함
- 평생교육의 중립성
  - 평생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함.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학점·학력인정, 학위취득기회 부여, 자격취득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상용하는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 교육과정·방법·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실시하는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효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자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대상 교습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과정